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10 월 1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안 발표

시정연설 때 Cuomo 주지사가 촉구한 가석방 심사 투명성 제고 주장을 이행하는 법령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가석방 심사 시 공공안전에 미칠 위험성과 재소자 본인의 필요성을 모두 평가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정부 관보\(State Register\)](#)에 공시되어 있는 이 법령안은 Cuomo 주지사가 시정연설 때 촉구한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투명성 제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사 법제에서 신뢰성은 가장 중차대한 요소인 바, 이 새로운 법령은 가석방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상식에 맞는 이 새로운 지침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 생활에 다시 복귀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온전히 평가하는 동시에 여전히 공공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 감옥에 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령안이 채택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처벌 방법 변경을 위한 교정범죄자 관리 자료 수집 평가”(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라는 명칭의 위험 및 필요성 평가 방식에 입각한 재소자의 현재 점수를 가석방 심사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이 점수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가석방 신청인의 교도소 내 행동과 범죄의 심각성 등 관련성 있는 각 요소를 모두 논의한 후,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석방이 기각될 경우,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그 사유들을 각기 개별적으로, 추단을 배제한 사실에 입각한 용어와 표현으로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령안은 18 세 미만 시점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의 가석방을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재소자의 범죄 당시 연령에 따른 감형의 여지와 범죄 시점 이후 객관적으로 나타난 인격적 성숙을 참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작은 청소년기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관한 미대법원의 최근 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Tina Stanford 가석방 심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공공의 안전과 가석방 신청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험 및 필요성 평가 원리가 반영된 정식 절차를 수립해서 문서화해야 하며, 이 새로운 법령은 본 위원회가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Glenn E. Martin JustLeadershipUSA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석방 위원회에서 채택한 새 법령은 심사과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다년간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이 상식적인 법령은 같은 뉴욕 주민인 희생자와 재소자 모두에게 있어 보다 공정한 형사 법제로 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Anthony Thompson 뉴욕 법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수단을 활용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번 결정은 형법 정책의 건전성을 잘 나타냅니다. 가석방 심리 절차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뉴욕주를 전국적으로 부각시킬 것입니다.”

Joanne Page Fortune Society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관련 법령의 변경안에 갈채를 보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에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과 그 가족, 그리고 납세자 모두에게 매우 크고 불필요한 인적, 재정적 부담을 치르면서 최소 형기를 여러 해 넘겨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변경안은 가석방 심사 제도에 일관되고 더욱 공정하고 증거에 입각한 투명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더욱 공정한 형사 법제의 수립을 위한 몹시 필요하고 귀중한 조치입니다.”

Elizabeth Gaynes 오스본협회 상임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거대한 진전으로서 이 새 지침은, 십대 시절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에는 미성숙과 성급함, 위험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 포함된다”는, 모든 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입증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존중하고, 어른이라면 모범적 수감 생활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고 향후 범죄 위험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공정함과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가석방 심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Seymour James 법률구조협회 상임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는 뉴욕주 가석방 심사의 가석방 심사 관련 규정에 대한 이번의 변화를 환영합니다. 이 새 규정에는 선한 행정부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으로 소중한 덕목의 하나인 투명성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또한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다소 주관적인 요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위험도 및 필요성 평가라는 수단을 활용할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요구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가석방 결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규정은 종신형을 살고 있는 미성년자의 가석방 심사 시 청년기라는 감형 요소를 고려할 것을 심사에 요구하는 최근의 연방 및 주정부 판례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감 중인 가석방 신청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수립에 있어 너무나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